

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황유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황유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윤종복,
이성배, 이효원, 임춘대,
정지웅, 최민규, 허·훈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육성계획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 공표 방식을 ‘서울시보 게재’로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민”을 “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)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<u>시민</u>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시보에 게재하</u> <u>여 시민</u>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(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표)으로, 이는 조례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